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6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6월 7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제4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6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서만원)

가. 제안이유

-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상위 법의 범명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와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 신설(안 제10조)
-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의 구체화(안 제11조제2항)
- 별지 서식 신설 등(안 별지 제1호, 안 별지 제2호)
 -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등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.
-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
 - 조문내용 일부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
 -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와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
 - 안 제10조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.
- 안 제10조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에 대한 신설 조항과 관련하여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서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19조에서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훈의식 고취를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 다만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.
- 아울러 부칙에서 보훈예우수당 시행일을 “2018년부터 시행한다.”라고 규정한 부분은 조례의 효력을 발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시기에 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4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부칙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행일을 “2018년부터 시행한다.”라고 규정한 부분은 조례의 효력을 발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시기에 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나. 수정내용

- 부칙 중 “제10조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제10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로 함.

5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7. 6. 21.

제안자 : 허홍석 위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부칙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행일을 “2018년부터 시행한다.”라고 규정한 부분은 조례의 효력을 발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시기에 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2. 수정내용

- 부칙 중 “제10조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제10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로 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는 <u>2018년</u> 부터 시행한다.	----- ----- <u>2018년 1월 1일</u> 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3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을 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여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(안 제10조)

나.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의 구체화(안 제11조)

다. 관계 법률의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1)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4)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5.11. ~ 5.31. / 11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신설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연 12회 보훈 예우수당 지급
2. 비용추계 전제: 보훈예우수당 지급(금액:2만원, 인원: 2,450명, 횟수:연12회)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	해	당	사	항	없	음
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보훈예우수당 지급	470,400	518,400	542,400	588,000	588,000	2,707,200
	소계(b)	470,400	518,400	542,400	588,000	588,000	2,707,200
□ 총 비용(a-b)		-470,400	-518,400	-542,400	-588,000	-588,000	-2,707,200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의존 재원	소계						
	시비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계						
	지방세수입	470,400	518,400	542,400	588,000	588,000	2,707,200
	세외수입 등						
지방채							
민간자본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470,400	518,400	542,400	588,000	588,000	2,707,200

5. 덧붙이는 의견: 시행년도에는 전체 대상자(2,450명)중 80%가 신청할 것을 전제. 매년 미지원자에게 신청안내문 발송하여 전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사회복지과 고슬기
연 락 처	02-2670-3387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인원수: 서울지방보훈청 자료 협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가보훈기본법」”을 “「국가보훈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 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.

제11조(종전의 제10조)제1항 본문 중 “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·공헌자가”를 “제3조제1호 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(종전

의 제10조) 제4항 전단 중 “별지 제1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 한다.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기 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 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(이하"구"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,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 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단 체 또는 회원</p> <p>4.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</p> <p>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」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</p> <p>6. 그 밖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(<u>신 설</u>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국가보훈 기 본법」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적용대상)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</p> <p>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</p> <p>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」 -----</p> <p>6.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</p> <p>제10조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 ① 구 청장은 제3조제1호 부터 제5호에</p>

제10조(사망위로금 지급)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·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 "위로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(사망일)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

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.

제11조(사망위로금 지급) ① -----
제3조제1호 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-----

 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별지 제2호서식-

다.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11조 ~ 제13조 (생략)

---. 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 ~ 제14조 (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)